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55
----------	-----

2025. 4. 30.(수)
산 업 경 제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이의영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5년 4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4월 14일

라. 상정일자 : 2025년 4월 22일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의영 의원)

가. 제안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도지사의 책무와 시행계획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 소상공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촉직 위원 기준 마련, 소상공인연합회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서민경제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충청북도지사의 책무를 규정 (안 제4조)

-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 (안 제6조)
-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 근거 마련 (안 제9조)
- 소상공인위원회 위촉직 위원 위촉 기준 마련 (안 제11조)
- 종전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삭제(안 제15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등에 대한 포상 (안 제 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

가. 발의배경

- 기존 조례에서 도지사의 책무와 시행계획 실적 평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부재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 위원회 구성 기준의 모호성과 위원회의 성격이 상설위원회에 해당하여 비상설 기준에 근거한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은 타당하지 않음
-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미흡
- 이에 상기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 개정을 추진함

나. 개정안 주요 조문 검토

- 안 제4조는 도지사의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대한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주체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당 조문의 신설은 타당함
- 안 제6조는 당해 연도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계획 실적 평가를 참고하여 다음연도 시행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것으로 개정이 타당함

- **안 제9조**는 제2항에서 현행 소상공인 관련단체를 소상공인연합회 지회로 명확히 하고, 제3항은 상위 근거법령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11조**는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위원회의 운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은 적절함
- **안 제18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참여 및 기여 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포상 규정 신설은 타당함

다. 관련 법령 등 검토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소상공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자원 확보,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한 지원 효과 제고 노력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및 지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제25조의2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및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조례의 근거 법령에 따라 도지사의 책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라. 종합의견

- (필요성)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함은 물론 조례의 예측가능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한 것으로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타당성)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며, 모호한 규정은 구체성을 갖도록 규정한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법적합성)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종합의견) 기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충청북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정책의 일관성,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지원으로 효율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며, 필요성,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은 적절함
- 다만, 다음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 참고하는 당해연도 시행계획의 실적 평가와 그 결과에 대한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분석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955호
의 결 연 월 일	. . . (제 회)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4월 11일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55
----------	-----

발의연월일 : 2025년 4월 11일

발 의 자 : 이의영, 김꽃임, 이옥규, 박경숙,
유재목, 이종갑, 임병운

1. 제안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도지사의 책무와 시행계획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 소상공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촉직 위원 기준 마련, 소상공인연합회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서민경제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충청북도지사의 책무를 규정 (안 제4조)
-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 (안 제6조)
-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 근거 마련 (안 제9조)
- 소상공인위원회 위촉직 위원 위촉 기준 마련 (안 제11조)

- 종전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삭제(안 제15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등에 대한 포상 (안 제18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2025. 4.
- 협의 : 경제통상국 소상공인정책과
- 비용추계 : 비용추계 제외 사유서 첨부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후단 중 “제7조제1호”를 “제8조제1호”로 한다.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중전의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해마다 수립·시행하는”을 “매년”으로,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같은 법 제7조제3항”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은 같은법 제7조제3항”으로, “포함해야”를 “포함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중전의 제8조)제2항 중 “소상공인 관련단체”를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지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중전의 제10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제11조(중전의 제10조)제3항 중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소상공인 관련 단체 대표
3. 소상공인 경영 관련 전문가
4. 경영 관련 분야 교수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4조(중전의 제1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지원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포상)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과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나 개인 및 단체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 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 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 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 록을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 예정자에 대하여는 <u>제7조제1호</u> 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 ----- ----- ----- ----- ----- <u>제8조제1호</u> ----- -----.
<u><신 설></u>	<u>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u> <u>(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상공</u> <u>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u> <u>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u> <u>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u> <u>하여야 한다.</u>
<u>제4조 (생 략)</u>	<u>제5조 (현행 제4조와 같음)</u>
<u>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충청</u> <u>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u> <u>「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2항에</u> <u>따라 해마다 수립·시행하는 충청</u> <u>북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u> <u>“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라 한</u> <u>다)에 같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u> <u>서 정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u>	<u>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u> <u>지사</u> ----- ----- ----- <u>매년</u> ----- ----- ----- ----- ----- <u>“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u> <u>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은 같은</u> <u>법 제7조제3항</u> ----- ----- <u>포함하여야</u> ---.

<신 설>

제6조 · 제7조 (생 략)

제8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상공인 지원업

②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 제8조 (현행 제6조 및 제7조와 같음)

제9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상공인 연합회 지회-----.

③ 도지사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법 제 25조의2 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

-----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③ -----

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생 략)

제11조 · 제12조 (생 략)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⑤ (생 략)

<신 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상공인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5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 5. 31.까지로 한다.

제16조(소상공인지원센터) ① 도지사

--- 다음 각 호의 -----

-----.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
의원

2. 소상공인 관련 단체 대표

3. 소상공인 경영 관련 전문가

4. 경영 관련 분야 교수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 · 제13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지원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삭 제>

<삭 제>

제16조(소상공인지원센터) ① -----

는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생략)

제17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 및 제16조의 사무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도의 출자출연기관 또는 민간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제18조 (생략)

- 제8조 -----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사무의 위탁) ① ----- 제8조 -----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포상)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과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나 개인 및 단체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관련법령 발췌

□ 소상공인기본법

-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2.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 ⑥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의2(보조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 ①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적, 임의적 발생비용에 대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사 유

- 본 조례의 개정으로 비용의 수반이 일부 예상되지만,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재정수반 요인을 적시하고 있지 않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소요 예산규모 예측이 불가하여 제외함

○ 작성자

- 경제통상국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